

검 토 보 고

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음.

☐ 제안이유

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생활보호기금을 조성 관리 중에 있으나 기금의 운용실적이 전혀 없고 기금설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☐ 주요골자

동 조례를 폐지함.

☐ 검토의견

- '71년 2월 13일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'64년부터 '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생활보호기금으로 관리해 왔으나,
- 현재까지 기금의 운용실적이 전혀 없었고 또한 '82. 12. 31일 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보호기금의 설치대상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한정됨에 따라 기금설치의 근거가 없어졌으므로 동 기금관리조례의 폐지는 당연하다고 판단됨.
- 한편 동 기금을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흡수하려는 계획은 생활보호기금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되는 적절한 계획으로 사료됨.